



즉시 배포용: 2020년 9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업적 퇴거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10월 20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뉴욕주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주거 및 상업 임차인을 퇴거 및 임대료 체불로부터 보호하려는 조치를 지속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상업 퇴거 및 담보권 행사에 대한 주정부의 모라토리엄을 10월 20일까지 추가 한 달 연장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매 시설 및 레스토랑을 포함한 비즈니스 소유주에게 팬데믹이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업 임대자 및 주택 담보 대출자를 위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보호 조치를 확대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의 확대에 따라 상업 임차인 및 주택 담보 대출자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하여 임대 또는 주택 담보를 처리하거나, 임대 기간을 재협상하고 다가오는 담보권 행사를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의 종료는 아직도 먼 일이며, 우리는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한 속에서 가족들을 지원하는 사업체 소유주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업적인 세입자에 대한 퇴거 금지를 30일 더 연장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 이유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먼저 심각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임차인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주거 및 상업 퇴거에 대하여 3월 20일까지 주정부 모라토리엄을 발표했습니다. 상업적 퇴거 및 담보권 행사 모라토리엄은 행정명령으로 8월 20일 및 이후에 9월 2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주지사는 6월 30일에 임차인 세이프 하버법(Tenant Safe Harbor Act)에 서명하여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주거 임차인 및 주택소유주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하여 이들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비상사태의 종료 시까지 연장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주거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했을 경우 추가 비용을 내지 않도록 추가 보호 조치를 제공하여, 임차인들이 주거 시설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통해 허용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